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-　　호

『2022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』
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『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　5월　11일

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지원개요

□ **지원목적** :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, **이전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**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

※ 공공기술 : 기술의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이 출연연, 전문연, 대학 등 기관에 귀속된 기술
민간기술 : 개인 또는 민간기업에 귀속된 기술

□ **지원규모** : 기업당 **최대 40,000천원** 이내

□ **지원내용** : 기술지원(시제품, 인증, 특허 등), 사업화지원(마케팅, 디자인 등), R&D과제 기획지원 등

□ **지원기간** : 협약일 ~ 2022년 10월 31일까지

2 지원대상

□ **신청자격**

○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
- 공고일 기준 **최근 1년 이내 국내·외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**

- 향후 2개월 이내 **국내·외 기술이전이 예정인 기업**

3 지원내용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 사업화 신속지원</th><th>2 R&D과제 기획지원</th></tr>
<tr><td>목적</td><td>이전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지원</td><td>이전기술을 활용한 R&D과제 기획지원</td></tr>
<tr><td>지원
규모</td><td>10社 정도</td><td>5社 정도</td></tr>
<tr><td>지원
금액</td><td>최대 30,000천원 이내</td><td>최대 10,000천원 이내</td></tr>
<tr><td>기업
부담금</td><td colspan="2">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원
내용</td><td>단일 또는 패키지 지원</td><td>R&D과제 기획 지원</td></tr>
<tr><td>❍ (단 일)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선택
❍ (패키지)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3개 이내 선택
※ 패키지 구성 시 프로그램 간 연계성 제시 필요</td><td>❍ (분 석) 기술·특허·시장동향 분석
❍ (진 단) 기업 R&D 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R&D과제 추천
❍ (제 안) R&D과제 신청·사업계획서 작성 지원</td></tr>
<tr><td>우대
사항</td><td colspan="2">· 대구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해 국내·외 기술이전을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(5점)
· 대구광역시 신산업 분야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기업(3점)
* 미래형 자동차, 물, 의료, 에너지, 로봇, 스마트시티,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인공지능
· 신산업 진출을 통한 사업재편 기업(3점)
* 신산업 판단 :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의2
· 대형기술이전(기술료 5천만 원 이상) 기업(3점)
· 대구시 스타기업(Pre스타기업 포함), 휴스타(Hustar) 참여기업, 고용친화기업, TP입주기업, 장애인 고용률 준수기업(3점)
· 출연연, 전문연, 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기업(2점)
· 대구테크노파크에 중개수수료를 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기업(2점)
· 대구지역 외, 타 지역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(2점)
·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은 기업(2점)
※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(최대 10점 부여)</td></tr>
<tr><td>유의
사항</td><td colspan="2">· ‘사업화 신속지원’과 ‘R&D과제 기획지원’은 중복 신청가능
· ‘사업화 신속지원’의 세부지원 프로그램은 목록 참조(3p)
· 부가가치세(VAT)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
· 총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(인건비, 간접비 불인정)
·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후,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“성공” 판정 시 지원금 지급
- 공급업체는 선정기업이 직접 선택 및 계약 후 추진</td></tr>
</table>

※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세부지원 프로그램

프로그램명		지원내용
기술 지원	기술사업화기획	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기획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
	기술지도(자문)	애로기술 진단, 기술컨설팅, 이전기술의 추가 기술자문 등
	시제품제작	이전기술의 시제품제작 지원(설계, 개발, 제작 등)
	제품고급화	이전기술을 활용한 기존제품 기능추가, 성능개선 등
	인증지원	제품 신뢰성, 성능, 표준화, 시험분석 등
	특허지원	국내외 특허 출원, 특허 로드맵, 특허전략수립 등
사업화 지원	마케팅머티리얼	브로슈어, 팸플릿, 홈페이지, 홍보영상, 웹 제작 등
	디자인	패키지디자인, 제품디자인 등
	브랜드개발개선	CI/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
	국내외 컨설팅지원	법률, 경영, 재무, 회계, (합자)법인 설립 컨설팅 등
	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	국내외 시장조사 및 해외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지원
	국내외 전시회참가	부스제작비, 참가비, 통역비 등 부대비용 등
	투자유치	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IR 자료 작성 등

※ 특허, 인증,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(출원서, 인증서 등) 제출 필요

※ 상기 목록에 없는 항목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
4 지원절차

사업공고	신청서 접수	선정평가 및 협약체결	사업수행	현장점검
대구TP [5.11]	⇨ 기업→대구TP [5월~6월]	⇨ 대구TP [7월]	⇨ 지원기업 [협약일~10.31]	⇨ 대구TP↔지원기업 [11월 초]

결과보고서 접수	최종평가	지원금 지급	
지원기업→대구TP [11월중]	⇨ 대구TP [11월 말]	⇨ 대구TP→지원기업 [12월 초]	**※최종평가 및 정산내역에 근거하여 지원금 지급**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5 신청서 접수 및 문의

□ **공고 및 접수기간** : 2022. 5. 11(수) ~ 6. 28(화)

□ **신청서 교부** :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**다운로드**

○ (재)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ttp.org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

□ **신청방법** : 온라인 접수

○ 온라인 : 담당자에게 전자우편(sung@ttp.org)으로 신청

□ **제출서류**

No.	제출서류(파일명)	비고
1	이전기술사업화지원 계획서 ※ 직인이 날인된 PDF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	서식 1
2	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	서식 2
3	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확약서(기술이전 예정기업만 해당) 1부	서식 3(해당 시)
4	기술이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(특허등록원부 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등)	
4	기업(개인)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	서식 4
5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	서식 5
6	최근 2년간 ('21년~'22년) 재무제표 각 1부 ※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가능	
7	사업자등록증 1부	
8	공급기업의 견적서 각 1부 ※ 공급가액(VAT제외)으로 견적서 제출	
9	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각 1부	서식 6(해당 시)

□ **문의처**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	김성혜 책임연구원	053-757-4155	sung@ttp.org
	정의현 주임연구원	053-757-4191	jung@ttp.org

6 평가방법

□ **선정방법** : **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**에서 사업계획서 **발표평가**를 통한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

□ **선정기준** : **기술성(20), 사업성(30), 추진역량(20), 파급효과(20), 우대배점(10점)**

※ 우대배점 : 해당표기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

□ **평가방법** : (선정평가위원회) 사업계획서 **발표평가**

(최종평가위원회) 결과보고서 **발표평가**

※ 접수규모에 따라 서면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

7 유의사항

□ **지원제외 대상**

○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
○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
○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/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/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/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/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

○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일 경우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
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.
*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*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* 상기의 신용등급이 “BBB” 에는 “BBB+”, “BBB”, “BBB-” 를 모두 포함함
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

○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
○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-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된 후에도 상기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취소, 협약 해약,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

○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